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

Children's Activity Space
Environmental Health Work Manual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www.me.go.kr



보건

복지

부

장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

관리감독기관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

Children's Activity Space
Environmental Health Work Manual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목차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요 1

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필요성	2
02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정의)	3
03	용어 설명	6
0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근거 법령	10
0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13
06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업무 내용	16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17

01	확인검사 관련 법령	19
02	확인검사 절차	21
03	확인검사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25
04	확인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26
05	확인검사 수수료	28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29

01	지도·점검 관련 법령	31
02	지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33
03	지도·점검 면제 대상	34
04	지도·점검 절차	35
05	지도·점검 주기	37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요령 39

01	감독기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40
02	지도·점검 수행 및 현장 요령	41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43

- 01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44
- 02 도로 및 건축자재 중금속 관리 방법 47
- 03 모래 등 토양 관리 방법 48

VI.

질의 응답(Q&A) 49

- 01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관련 50
- 02 확인검사 관련 53
- 03 지도·점검 관련 58
- 04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관련 64
- 05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66
- 06 기본 및 정밀검사 관련 69
- 07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연계 관련 71

VII.

부록 73

VIII.

별지 서식 97

Notice

공지사항

01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방문
(환경부) 발행물) 소책자) 하시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본 매뉴얼은 시군·구 및 교육청 등
관리·감독 공무원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 수행 시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설명하지 못한 업무처리와
절차 기준 등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지도·점검표
와 지도·점검 요령도 함께 작성·제시했습니다.

03

아울러, 본 매뉴얼은 관리·감독 공무원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관련 규정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과 관련한 규정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자(공무원)와
피검사자간에 발생 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04

끝으로, 본 매뉴얼은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매뉴얼에서 언급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요

- 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필요성
- 02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정의)
- 03 용어 설명
- 0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근거 법령
- 0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06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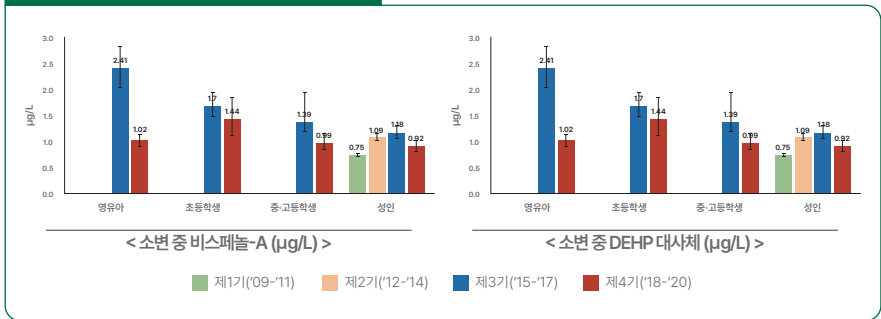
0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필요성

어린이는 단순히 어른의 작아진 모습이 아닙니다. 어른에게는 아무런지도 않을 적은 양의 유해물질이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난감을 빠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성인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3~9세의 야외 활동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34분으로 미국 어린이 119분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야외 활동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내 환경의 질이 아이들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어른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02

어린이활동공간 범위(정의)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철봉, 시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공간(주택단지, 의료기관, 음식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초등학교 놀이시설



유치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놀이시설



아파트 놀이시설



음식점 놀이시설



도시공원 놀이시설



키즈카페 놀이시설



의료기관 놀이시설



종교시설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VII. 부록 1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 현황: VII. 부록 2 참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가정 어린이집 보육실



직장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집 유희실

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국공립 유치원 교실



사립 유치원 교실



유치원 다목적실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일반 교실



도서관



돌봄교실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

- '라'의 초등학교 교실과 같음.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붕붕뿔뿔,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가 설치된 키즈카페



붕붕뿔뿔 설치 키즈카페



미니모험놀이 설치 키즈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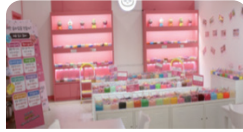


미니에어바운스 설치 키즈카페

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레고방



슬라임방



블럭방

03

용어 설명

①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함.

②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함. 수질오염으로 인한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가슴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을 말함.

③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④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말함.

⑤ **“감독기관”**이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을 말함.

⑥ **“시험·검사기관”**이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검사기관을 말함.

⑦ **“확인검사”**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등이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수선하였을 때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함.

⑧ **“지도·점검”**이란

감독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방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함.

⑨ **“환경안전관리기준”**이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를 말함.

⑩ **“기본검사”**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ay Fluorescence, XRF)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⑪ **“정밀검사”**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함.

⑫ **“마감재”**란

외부의 영향(힘)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외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지, 벽지, 발포재, 원목·합판, 충격흡수재(인조가죽재질) 등을 말함.

- 창호(창이나 문)를 마감재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창호 표면에 시트지 또는 발포재가 부착된 경우, 해당 창호(시트지 또는 발포재)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창호 표면층을 열처리하여 내마멸성과 높은 표면경도를 확보한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다만, 창호 노후화로 시트지 등을 부착한 경우는 적용 대상임.

⑬ **“평가(assessment)”**란

환경오염물질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정하는 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독성평가, 위해성평가가 있음.

⑭ **“노출(Exposure)”**이란

환경 중 화학물질이 생태계 또는 개체에 접촉되거나 체내로 들어오는 상태를 말함.

⑮ **“노출 경로”**란

화학물질이 신체에 접촉되는 방법 또는 경로로 흡입, 섭취, 피부접촉 및 주입 등이 있음.

⑯ **“유해성(Hazard)”**이란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능력으로 화학물질의 고유한 독성을 의미함.

⑰ **“위해성(Risk)”**이란

유해성에 노출을 곁한 개념으로 화학물질의 독성(특정 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 혹은 집단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확률 또는 가능성을 말함.

⑱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함.

⑲ **“내분비계”**란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기관을 말함. 수분과 염의 균형 유지,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 성장, 발육, 생식에 대한 조절 기능, 체내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기능이 대표적임.

⑳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생물체 내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을 말함. 환경중에 잔류해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해서 환경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함.

㉑ **“위해중금속”**은

비소, 수은, 카드뮴, 납, 크로뮴 등으로 미량만 들어가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음.

㉒ **“납”**은

어린이들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뇌신경계 영향 등의 행동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인트, 금속 합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음.

23 “프탈레이트”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로 장난감, PVC 제품뿐만 아니라 목재, 향수용매, 바닥재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음.

24 “폼알데하이드(HCHO)”란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가진 기체상의 화학물질로 건축 단열재, 실내 가구 등에서 발생하며, 새집증후군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음.

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란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을 총칭한 것으로 피부접촉 또는 흡입을 통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벤젠,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에 속하는 물질임.

26 “Bake-Out(베이킹아웃)”이란

새로 지은 건축물이나 수선 작업을 마친 건축물 안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건축물 실내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이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환기를 통해 건축자재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폼알데하이드와 같은 휘발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함.

0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근거 법령

가. 어린이활동공간 지정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시행령 제1조의2)

-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 도서관, 특수학교의 교실, 키즈카페를 말함.
- * 그네, 정글짐, 철봉,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주택단지 놀이터,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등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지원 (『환경보건법』 제20조제2항)

- »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내지 제9항)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제4항)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5항)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제6항)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음.(제9항)

라.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제1항)
- »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제4항)

»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제5항)

-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 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후 30일 이내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
-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 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로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있는 경우
-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 시설

마.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조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환경보건법」 제33조제1항 제2호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제1차 위반</th> <th>제2차 위반</th> <th>제3차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250만원</td> <td>35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만원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1-222호, '21.11.8.)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 ①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확인검사 신청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검사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평면도 등 공간 배치 확인이 가능한 도면)을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 ②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로부터 확인검사 신청서를 받은 검사기관은 확인검사 면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함.
- ③ 신청서를 접수한 검사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함.
- ④ 검사기관은 기본검사와 정밀검사가 완료된 경우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확인검사 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알려야 함.
- ⑤ 감독기관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환경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확인검사 이행기간을 정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 전에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 명령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함.
- ⑥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⑦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검사 명령 이행보고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와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를 제출해야 함.

0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중금속 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관리기준, 목재 방부제 안전관리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검사기관 및 감독기관은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는지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를 통해 확인해야함.

- ※ 확인검사 신청 주체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 확인검사 수행 주체 : 검사기관
-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 주체 : 감독기관(담당 공무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구분	실내외	검사대상	검사내용(항목)	비고(사진)
제1호	실내외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등이 벗겨지지 않을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는 검사제외	 도료 벗겨짐 및 녹(부식) 현상
제2호	"가" 목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로뮴 총합량 : 1,000 mg/kg 이하 ② 납 : 90 mg/kg 이하	 출입문 외관 시트지 부착
		실내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프탈레이트류(7종) 총합량 : 0.1% 이하

구분	실내외	검사대상	검사내용(항목)	비고(사진)	
제2호	"나" 목	실내	도로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폼알데하이드 : 0.02 mg/m²·h 이하 ② 톨루엔 : 0.08 mg/m²·h 이하 ③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2.5 mg/m²·h(페인트) 또는 4.0 mg/m²·h(벽지, 바닥재)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벽체 도료</p>
제3호	실내외	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제1호 및 제2호 사용 금지 ②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사용 금지 	 <p style="text-align: center;">목재 벤치</p>	
제4호	"가" 목	실내외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 : 200mg/kg 이하 ② 6가크로뮴 : 5mg/kg 이하 ③ 카드뮴 : 4mg/kg 이하 ④ 수은 : 4mg/kg 이하 ⑤ 비소 : 25mg/kg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놀이시설 내 모래</p>
	"나" 목			①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 목	실내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로뮴 총합량 : 1,000 mg/kg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놀이시설 내 합성고무 바닥재</p>
	"나" 목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 75 mg/kg 이하	
	"다" 목			③ 프탈레이트류(7종) 총합량 : 0.1% 이하	
제6호	"가" 목	실내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 농도 : 80 µg/m ³ 이하	 <p style="text-align: center;">실내공기질</p>
	"나" 목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 400 µg/m ³ 이하	

1. $\mu\text{g}/\text{m}^3$

- 공간안(m^3)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의 양(무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공간 1m^3 (가로 $1\text{m} \times$ 세로 $1\text{m} \times$ 높이 1m 인 공간)에 오염물질 몇 μg 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것임. 여기서 $1\mu\text{g}$ (마이크로그램)은 10^{-6}g (0.000001g , $1/1,000,000\text{g}$)임.
- 위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기준인 $400\mu\text{g}/\text{m}^3$ 이하의 의미는 공간 1m^3 안에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00\mu\text{g}$ ($0.000001 \times 400 = 0.0004\text{g}$)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2. mg/m^3

- 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간 1m^3 에 오염물질 몇 mg 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냄. 여기서 1mg (밀리그램)은 0.001g ($1/1,000\text{g}$)임.

3. $\text{mg}/\text{m}^2\cdot\text{h}$

- 단위면적 당 방출량을 말함.
- 도로 및 마감재 시료에 대하여 일정한 크기로 시험편을 제작한 다음 소형방출챔버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표기하는 단위로서, mg 은 방출된 오염물질의 양, m^2 은 시험편의 면적, h 는 방출시험시간을 나타냄.
- 따라서, 1m^2 의 시험편을 1시간 동안 방출시험을 했을 때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mg 으로 표기한 것임.

4. mg/kg

-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에서 채취한 시료(도로, 마감재, 모래 등 토양, 합성고무바닥재 등) 1kg 에 오염물질이 몇 mg 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함량을 나타냄. 여기서 1mg 은 10^{-6}kg (0.000001kg)임.
- 예로 환경안전관리기준 2호가목의 납 함량 기준인 $90\text{mg}/\text{kg}$ 이하일 것의 의미는 시료 1kg 중 납이 90mg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임.

5. 총함량 %

- 백분율로 표기하는 단위로서 1%는 100분의 1이며, $10000\text{mg}/\text{kg}$ 과 같음.
- mg/kg 의 단위를 %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음.
- $10000\text{mg}/\text{kg} = 10\text{g}/\text{kg} = 10\text{g}/1000\text{g} = 1\%$
($1000\text{mg} = 1\text{g}$, $1\text{kg} = 1000\text{g}$)

06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업무 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

-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최초 설치하거나 이후 증축·수선하였을 때, 검사기관에 시험·검사 신청을 했고, 적합 판정 받았는지를 감독기관은 이를 확인(확인검사)하여야 함.
- » 감독공무원은 보통 지도·점검 前 방문시설에 대한 정보(설치연도, 최근 지도·점검일, 확인검사일 등)를 파악해야 함. 이러한 정보파악 과정(검사기관에 협조 요청)에서 확인검사 이행여부가 확인되거나, 현장 방문 및 육안검사 과정에서 시설 증·수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위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활동공간을 운영한 사실을 감독기관이 인지한 즉시 「환경보건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9항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여야 함.

나.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시설 개선명령(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

- » 감독기관은 담당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내 시설에 출입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음.(「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
- » 감독기관 자체점검, 환경부 지원 점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 감독기관은 해당 시설에 시설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를 명령하여야 함.
-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의 자체 점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을 확인한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시설개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함.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 01 확인검사 관련 법령
- 02 확인검사 절차
- 03 확인검사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04 확인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 05 확인검사 수수료

확인검사제도 개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때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로 어린이활동공간 담당 공무원은 검사기관이 귀 기관에 제출한 확인검사 결과를 평가하면 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새로 짓고 난 후, 또는 운영 중인 운영중인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장식을 바꿀 때 사용하는 벽지, 시트지, 도로 등에서 나오는 환경유해인자가 민감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새 건물, 새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4년 3월에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2014년 9월 25일 시행)하였음.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권에 새로이 편입된 신축 어린이활동공간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끝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 업무와 시설 인·허가 업무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른 경우, 상호 소통하여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불합격한 시설이 인·허가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간혹 두 부서간 소통 부재로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이 인·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01

확인검사 관련 법령

가. 법률

구분	시행 주체	조항	주요 내용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23조제4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확인검사 이행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23조제6항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수선한 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확인검사 결과 교부	검사기관	제23조제7항	- 검사기관은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확인검사 신청인과 감독 기관에 교부해야 함.
확인검사 부적합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23조제8항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확인검사 부적합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됨.
확인검사 이행 명령	감독기관	제23조제9항	- 감독기관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해야 함.

나. 시행령

구분	시행 주체	조항	주요 내용
환경안전관리 기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6조제1항 (별표 2)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금속,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
확인검사 이행 증축·수선 규모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6조의2	- 연면적 33m ² 이상 증축한 때 - 70m ² 이상 수선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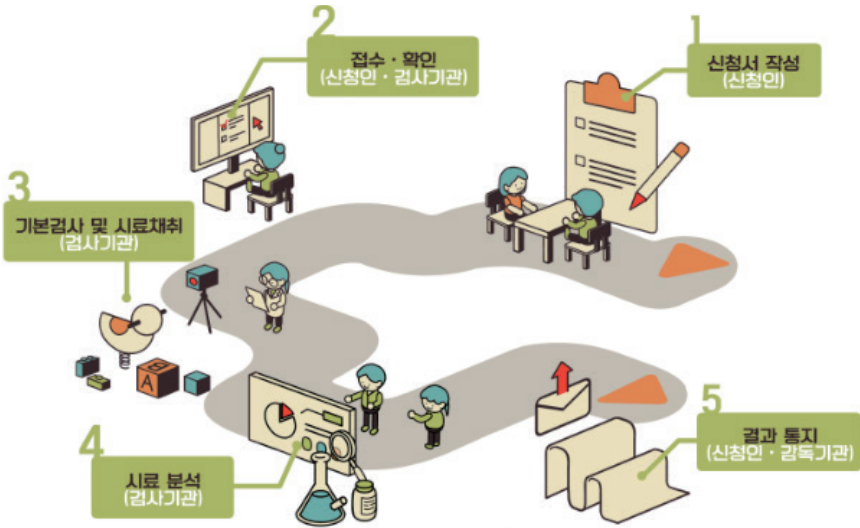
다. 시행규칙

구분	시행주체	조항	주요내용
확인검사 이행 시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1조의2제1항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확인검사 구분	-	제11조의2제4항	-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로 구분함.
확인검사 면제	-	제11조의2제5항	- 환경표지인증 받은 도로, 마감재료 등을 사용하여 증축·수선한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설치 검사에 합격한 경우
확인검사 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1조의3제3항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함.
확인검사 명령 이행상태 확인	지자체 및 교육청	제11조의3제4항	- 감독기관은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이행상태를 지체없이 확인해야 함.

02

확인검사 절차

가.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완공) 또는 증축 및 수선한 경우



순서	구분	업무내용
①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수선 완료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로 신축은 토목, 건축(인테리어 등 포함), 전기 공사와 같은 물리적 공사가 완료된 완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을 승인하는 준공 행위 이후 확인검사를 이행하면 안됨. - 증축(연면적 33m²) 또는 수선(70m²)한 때임. - 위 건축 행위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 함.
②	확인검사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VIII. 별지 서식 3 참조)에 맞춰 확인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기관 연락처 : VII. 부록 3 참조 - 완공 및 증축·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됨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완공 즉시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검사기관 방문 일정 사전 조율 필요
③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기관이 아님. - 검사기관은 확인검사 면제 요건 시설에 대해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함.
④	현장 방문 및 확인검사 실시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검사(기본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육안 검사, 중금속 간이측정 등 기본검사와 정밀검사(시료채취)로 나눠 실시함.
⑤	채취 시료 분석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수했는지 또는 초과했는지를 분석(정밀검사)함.
⑥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통보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채취한 시료의 분석이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VIII. 별지 서식 4 참조)의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결과)를 작성 하여 확인검사 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함께 송부하여야 함.

순서	구분	업무내용
㉗	확인검사 결과 분석 및 종결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제출한 확인검사 결과를 분석한 바,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확인검사를 종결처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㉘	(부적합의 경우)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 확인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어린이활동공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다른 경우, 확인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부적합 확인검사 결과를 시설물 인허가 부서에 공유하여 해당 시설이 사용승인(준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㉙	개선 명령 이행 및 이행 결과 통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감독기관의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다는 증명서를 감독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		
㉚	개선 명령 이행결과 접수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은 부적합 시설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했다는 검사기관의 결과증명서를 최종 확인한 후 확인검사를 종결처리하여야 함.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㉙번 절차부터 다시 시작함.

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미이행 확인 시

순서	구분	업무내용
①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미이행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증축·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하지만,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위 규정을 모르거나, 고의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서 어린이활동공간을 운영함.
②	확인검사 미이행 확인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중 해당 공간이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 중에 있음을 확인함.
③	확인검사 이행명령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감독기관은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VIII. 별지 서식 5 참조)하여야 함. - 확인검사 명령 시 20일 범위에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④	확인검사 이행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감독기관의 확인검사 이행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함.
⑤	확인검사 이행보고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검사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VIII. 별지 서식 6 참조)의 확인검사 이행보고서에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
⑥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이행상태 확인 및 종결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은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확인검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4항)
⑦	(미이행의 경우) 확인검사 재이행 명령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감독기관의 개선 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재이행 명령을 내려야 함. - 이후 절차는 위 확인검사 미이행 후속 절차와 같음. (④~⑥)

03

확인검사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가. 벌칙

조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제1호	- 지자체 및 교육청의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보건법」 제31조제3항 제2호	-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 확인검사 결과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어린이활동공간	

나. 과태료

조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환경보건법」 제33조제2항 제1호	-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tr> <th>제1차 위반</th> <th>제2차 위반</th> <th>제3차 위반</th> </tr> <tr> <td>250 만원</td> <td>350 만원</td> <td>500 만원</td> </tr> </table>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04

확인검사 대상 및 제외 대상

구분	확인검사 대상	확인검사 비대상
신축(완공)	○	×
증축(연면적 33m ² 이상)	○	×
수선 (도로,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수지)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70m ² 이상)	○	×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시설	○ (신축 시설)	○ (증축수선 시설**)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 시설	×	○

*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재질 바닥재

**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증축시설은 확인검사를 받지 않지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증축 내용,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 사용 내용 등)을 감독기관에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함.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는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마크)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및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에 한하여 확인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며,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음.



환경표지 인증 마크

- ①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매 내역서 : 구매내역서에는 공사 시 사용한 제품(인증)의 제조 업체명,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울러, 해당 제품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녹색제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인정되지 않음.
- ② 시공 시 사용된 환경표지 인증 제품 견본 또는 제품 잔여 분, 시공 전후 사진 등 구매 내역서에 기재된 제품(인증)으로 시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위 ①과 ②를 둘 다 구비해야만 확인검사 면제가 인정되며, 위 요건을 충족한 확인검사 면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지자체 또는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지도·점검 시 필요한 경우에 위 서류를 확인하고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내려야 함.
 -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매뉴얼 VI. 질의 응답 16번 참조

05

확인검사 수수료

(단위: 원)

검사 종류	검사 항목	수수료
기본검사	부식, 크랙, 중금속 (방사선 측정)	- 시설 면적*에 따라 100,000원 또는 150,000원 * 10개 교실 또는 75m ² 면적 기준으로 교실 수 및 면적 증가시 수수료 증액
정밀검사 (시료채취)	중금속	- 각 항목별 44,200원 (도로 및 마감재료, 4종*) 176,800원 (모래 등 토양, 5종**) 221,000원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비소
	실내공기질	- 폼알데하이드(HCHO) 124,000원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39,000원
	목재 방부제	- 160,000원
	기생충란	- 39,300원
	프탈레이트류	- 150,000원
	폼알데하이드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45,000원

- ※ 부가세·출장비 별도
- ※ 산출근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 01 지도·점검 관련 법령
- 02 지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03 지도·점검 면제 대상
- 04 지도·점검 절차
- 05 지도·점검 주기

지도·점검 제도 개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은 「환경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이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을 방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임.(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 없이 검사기관 단독으로 현장 방문 및 점검할 수 없음.)

이러한 지도·점검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이 최종적으로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 인허가 부서로부터 준공 인·허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이 관내 상황에 맞게 현장을 방문(수시 또는 정기 점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로서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증축·수선할 때 받는 확인검사가 아님.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지도·점검 중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위 규정(「환경보건법」제23조제4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제5항에 따라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아울러, 「환경보건법」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는 지자체 및 교육청 고유사무인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끝으로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은 지도·점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효과적인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최근 수년간 지도·점검하지 않은 어린이활동공간 또는 시설 노후화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상대적으로 우려되는 시설 중심으로 선정하여 점검해야 함.

01

지도·점검 관련 법령

가. 법률

구분	시행 주체	조항	주요내용
지도·점검 추진 근거	-	제29조제1항	- 감독기관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시료채취 또는 시료 채취 의뢰	지자체 및 교육청	제29조제3항	- 감독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채취한 시료 검사 의뢰	지자체 및 교육청	제29조제4항	- 채취한 시료를 시험·검사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시설 개선 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지자체 및 교육청	제23조제5항	-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23조제4항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시행령

구분	시행 주체	조항	주요내용
환경안전관리 기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6조제1항 (별표 2)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중금속,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

다. 시행규칙

구분	시행주체	조항	주요내용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 기간 설정	지자체 및 교육청	제11조제1항	- 감독기관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VIII. 별지 서식 1 참조)하여야 함.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 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 기간 연장	지자체 및 교육청	제11조제2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개선 명령 이행보고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제11조제3항	- 개선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 지체 없이 개선명령 이행보고서(VIII. 별지 서식 2 참조) 및 증빙서류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개선 명령 이행여부 확인	지자체 및 교육청	제11조제4항	-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받거나 개선명령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02

지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가. 벌칙

조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3호	- 지자체 및 교육청의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조항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2호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점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제1차 위반</td> <td>제2차 위반</td> <td>제3차 위반</td> </tr> <tr> <td>250만원</td> <td>350만원</td> <td>500만원</td> </tr> </table>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제1차 위반	제2차 위반	제3차 위반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03

지도·점검 면제 대상

가.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류(「환경보건법」 별표 2의 제2호 가목 및 제5호)

- » 신축 확인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도로, 마감재, 합성고무(수지)재질 바닥재에서 일체 증축·수선 행위가 없는 경우. 단, 도로 및 마감재, 합성고무(수지)재질 바닥재에서 금이 가거나 일부가 벗겨져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지도·점검 대상임.

나. 목재 방부제(「환경보건법」 별표 2의 제3호 가목 및 나목)

- »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

다. 실내공기오염물질 TVOC 및 HCHO(「환경보건법」 별표 2의 제6호)

- » 연면적 430m²이상 어린이집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최근 1년) 및 권고(최근 2년) 기준을 준수한 시설

04

지도·점검 절차

가. 감독기관 지도·점검 절차

순서	구분	업무내용
①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선정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수년간 지도·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이력 등이 있는 어린이활동공간들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야 함. - (제외대상) 차년도에 증축·수선이 예정된 시설로 확인검사 대상인 시설, 신축 후 확인검사 적합 후 일체 증·수선 행위가 없는 시설, 환경안심 인증 시설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VIII. 별지 서식 7 참조) ※ 자세한 사항은 VI. 질의 응답 23번 참조
②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실시 (감독기관 담당 부서,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만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취한 시료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과 동행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前 검사기관과 현장 방문 일정을 협의 · 시료채취는 동행한 검사기관에서 수행
③	채취 시료 분석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수했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검사기관 실험실에서 분석(정밀검사)함.
④	지도·점검 결과 송부 (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채취한 시료의 분석이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VIII. 별지 서식 8 참조)를 작성하여 감독기관 담당부서에 송부함. * 검사기관은 지도·점검 결과 송부 전 감독기관 담당부서 변경 여부 필히 확인
⑤	지도·점검 결과 분석 및 종결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이 제출한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종결된 것이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때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시행령 별표 2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IV 어린이활동공간
시행령 별표 2

V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
담당부서

VI 질의 응답
(Q&A)

VII 부록

VIII 별지 서식

나. 지도·점검 결과 불합격 시 후속 절차

순서	구분	업무 내용
①	시설 개선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사전 통지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문제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 - 아울러,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②	피검사자 의견 접수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타당한 경우는 처분 취소* 처리하며,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경우 시설 개선 명령 등 후속 조치함. * 처분 취소 결정 前 해당 시설 검사 기관과 시험·검사 결과 및 현장 방문 당시의 현장 상황 등을 논의한 후 등 피검사자 의견타당 여부 최종판단
③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사자 의견 불수용 시) 「환경보전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부적합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④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이행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는 감독기관의 이행 명령을 3개월의 범위에서 준수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⑤	개선 명령 이행여부 확인 및 종결 (감독기관 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후 개선 명령 이행여부를 실제 확인(현장 방문, 검사기관 검사결과 보고서 검토 등)하여야 함. - 개선 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종결처리 함. -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①번 절차부터 다시 시작함.

05

지도·점검 주기

가. 수시 지도·점검

- » 감독기관은 관리 중인 어린이활동공간(학교 등)에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들여와 실내 공기 오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부실 시공으로 어린이 건강 피해 우려가 있는 등 특이 상황 발생 시 지도·점검할 수 있음.

나. 정기 지도·점검

- » 아파트 놀이시설 및 도시공원 놀이시설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2년 주기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시설 시험·검사 주기(3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함.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요령

01 감독기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02 지도·점검 수행 및 현장 요령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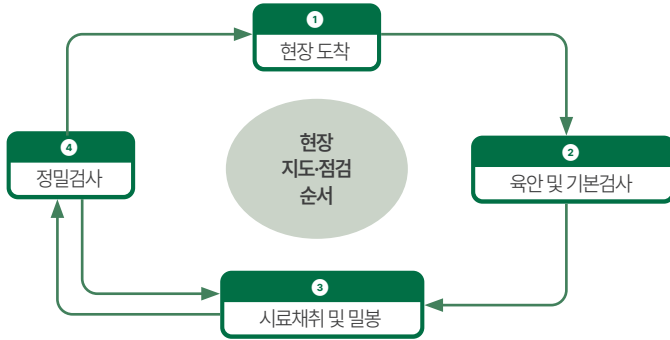
감독기관 지도·점검 계획 수립

가. 지도·점검 계획 수립

- »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자체 및 환경부 지원)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신축)에 합격한 어린이활동공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시설 개보수 사항이 없는 시설은 당해연도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 지도·점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석면안전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일자와 같은 날짜에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함.

02

지도·점검 수행 및 현장 요령



가. 지도·점검은 2명 이상 1개조로 수행하며,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 1명은 필수 인원임.

(필요 시 검사기관 담당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음.)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채취·분석 담당 공무원 또는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담당자이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임.

나. 담당 공무원은 현장 방문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 등에게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설명하고 신분증(공무원증, 사원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현장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표(VIII. 별지 서식 9참조)를 작성하여야 함.

라.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기본검사) 결과에서 기준치 초과우려가 있어 시료채취를 했거나, 실내공기질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확인서(VIII. 별지 서식 10 참조)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경우, 해당 시료는 검사 기관(VII. 부록 3 참조)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여야 함.
- » 채취 시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 시료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현장 사진은 추후 고발 및 행정처분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여야 함.

» 동일 자재 또는 동일 상황일 경우에는 대표 사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감독기관이 동일 자재(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를 사용하고 있는 교실을 시설개선 명령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기관은 최초 환경안전기준 초과 장소는 물론 동일 자재 사용 장소를 시험검사 결과지에 기재하고 이를 감독기관에 문서(정부 24를 활용)로 통보하여야 함.

바. 지도·점검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점검자는 현장 지도·점검 완료 후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지도·점검표 및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전달하거나, 사본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확인이 가능한 방법(공문 발송 등)으로 이를 송부하여야 함.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 01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 02 도로 및 건축자재 중금속 관리 방법
- 03 모래 등 토양 관리 방법

01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맞통풍)를 통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증가시켜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 낮추기, ▲실내공기 오염원 제거하기, ▲오염물질 방출이 높은 제품을 낮은 제품으로 교체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실내 환기하기

환기란

환기는 실내에 정체되어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과정으로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하는 방법 중 제일 중요함.

환기방법

자연환기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3번 각 30분 이상으로 맞통풍 환기를 해주며, 오전 10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음.

- 어린이활동공간 구조상 맞통풍 환기가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함.

기계식 환기 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는 빗물 또는 쓰레기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배출구에서 나오는 공기가 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함.

환경표지 인증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환경표지 인증 건축자재란

환경부 건축자재표지(실내표지), 환경표지, 단체표준인증표지(HB 마크) 등이 부착된 건축자재

구분	건축자재의표지	환경표지	단체표준인증
표지			
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산업표준화법 제7조 및 한국공기청정협회 정관조
적용 범위	벽지, 바닥재, 접착제, 실란트, 페인트, 퍼티, 목질판상제품 등 건축 마감재	건축자재,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구 등 생활환경에 밀접한 제품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

■ 실내표지, 환경표지, 단체표준인증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단위: mg/m²h)

구분	오염물질	실내 표지	환경마크	HB 마크*
페인트	폼알데하이드	0.02	0.02	0.008
	톨루엔	0.08	0.08	0.03 (5VOC**)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2.5	0.8(유성 도료)	0.1
벽지	폼알데하이드	0.02	0.015	0.008
	톨루엔	0.08	0.08	0.03 (5VOC)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4.0	0.1	0.1
바닥재	폼알데하이드	0.02	0.015	0.008
	톨루엔	0.08	0.08	0.03 (5VOC)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4.0	0.1	0.1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0.02	0.015	0.008
	톨루엔	0.08	0.08	0.03 (5VOC)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2.0	0.1	0.1

* 최우수 등급 기준, 다른 인증제에는 없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을 폼알데하이드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농도의 총합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표지인증
표지

II. 어린이활동공간
표지
표지

III. 어린이활동공간
표지
표지

IV. 어린이활동공간
표지
표지

V. 어린이활동공간
표지
표지

VI. 걸의음당
표지
표지

VII. 북부
표지
표지

VIII. 별지서식
표지
표지

친환경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사용

■ 친환경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또는 환경표지 홈페이지, 한국공기청정기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환경 가구 및 전자제품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

- 공기청정기에 대한 성능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 구매 시 성능 확인 필요

아울러, 가구의 경우 철재가구나 압축성형하지 않은 목재를 구입하며, 가죽 제품은 화학물질 가공을 많이 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

■ 친환경 가구 및 전자제품 사용

밀폐공간에서 청소기, 히터(가스스토브), 컴퓨터, 프린터 등과 같은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한 후 환기 실시
에어컨, 가습기, 공기청정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필터 교체 및 내부 청소 필요

02

도료 및 건축자재 중금속 관리 방법

시공 전

■ 친환경 도료 및 건축자재 구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또는 환경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친환경 도료 및 건축자재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

시공 후

■ 육안검사 실시

어린이가 많이 노출되는 시설물에 도료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건축자재는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육안검사 실시

■ 건축자재 손상 및 유해 건축자재 확인

손상 부위 및 유해 건축자재 부위를 즉시 제거하여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등 안전조치 필요

※ 친환경 건축자재 확인하는 방법: VI. 질의 응답(Q&A) 29번 질의 참조

03

모래 등 토양 관리 방법

모래 등 토양에 이물질(설치된 시설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도료 등)이 섞이지 않도록 시설물 및 토양에 대한 주기적인 육안검사가 필요하며, 중금속이 검출되었을 경우, 세척 및 모래 교체 등과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바닥재 모래는 사람과 애완동물 등 외출이 많은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함.

VI.

질의 응답 (Q&A)

- 01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관련
- 02 확인검사 관련
- 03 지도·점검 관련
- 04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관련
- 05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 06 기본 및 정밀검사 관련
- 07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연계 관련

01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관련

01 어린이활동공간이 무엇이죠?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키즈카페를 말합니다.

- 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육실을 말하며, 원장실이나 조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치원도 교실로 한정합니다. 매뉴얼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
2.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02 어린이활동공간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그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소적 요건과 기구적 요건을 둘 다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 ① 즉 도시공원, 아동복지시설, 주택단지 놀이터, 공공도서관, 하천시설, 박물관 등 행안부에서 규정한 20개의 장소(장소적 요건)에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볼풀장 등 산업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기구적 요건)이 설치된 시설을 말합니다. 매뉴얼 VII. 부록 1, 2를 참조하세요.

관련 규정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4.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부 고시 제2020-228호, '20.12.30.)

03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 교실이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되는데, 이 교실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요?

교실이란 어린이가 정규 수업을 받는 공간을 의미하며, 보통교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실이 해당됩니다.

- ㉠ 특별교실의 경우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컴퓨터실, 영어학습실, 시청각실, 돌봄교실 등이 있습니다.
- ㉡ 다만, 상담실, 보건실, 급식실, 행정실, 복도 등과 같은 수업이 목적이 아닌 공간은 교실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제5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0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실·행정실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지 않는 곳은 「환경보건법」 적용 제외 대상일 것 같은데, 어느 공간까지 「환경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이 해당됩니다.

- ㉠ 어린이집은 보육실(유희실 포함)만이 해당되며, 현관·베란다, 원장실, 교사실·행정실·식당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유치원도 교실 외에 현관·베란다·원장실·교사실·식당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교실이란 어린이가 정규 수업을 받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보통교실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특별교실이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키즈카페(붕붕뿔뿔-미니 모험놀이-미니에어바운스 설치, 완구 제공)가 최근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 중인 키즈카페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네,미끄럼틀,정글짐 등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키즈카페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 「환경보건법」제23조를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 ⊙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놀이형(붕붕뿔뿔,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에 한함)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완구를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카페는 2023년 5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등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 제7호
2.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30295호 (2019.12.31.)

02

확인검사 관련

-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점검요령
-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제도
-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요령
-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방법
- VI 권역별
담당 (Q&A)
- VII. 부록
- VIII. 별지서식

06 확인검사는 무엇이며, 꼭 받아야 하나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행정 행위로 위와 같은 건축행위가 일어난 경우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 ⊙ 감독기관은 지도·점검 과정에서 방문한 어린이활동공간이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내지제9항
2.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0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누구이며, 이러한 확인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 주체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이며,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검사기관 중 한 곳에 확인검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 즉, 신청주체는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 교장 등(사실의 장)이 되겠으며,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확인검사 신청 주체 및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확인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 연락처는 매뉴얼 VII. 부록 3을 참조하세요.

- * 비영리법인 검사기관 지정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 당연기관: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 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2. 「환경보건법」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08 확인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확인검사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① 신축의 경우 토목, 건축(인테리어 포함), 전기 공사와 같은 물리적 공사가 완료된 시점(완공 후)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완공 이후 행정 절차인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는 준공검사를 받고 난 후 확인검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확인검사 부적정 사례

00 교육청 건축물 준공업무 담당 부서에서 「환경보건법」상 확인검사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확인 검사 승인없이 00 초등학교에 대해 준공 허가를 내줌. 이후 00 교육청 지도·점검부서에서 00 초등학교를 지도·점검하면서 확인검사 미이행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를 확인함.

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활동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보건법」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09 확인검사 증축·수선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증축의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33㎡ 이상을 말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 덧붙여 늘리어 33㎡를 지은 경우입니다.

*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수선은 손실, 파손된 도로, 마감재료, 합성고무(수지) 재질의 바닥재를 70㎡ 이상 고치거나 수리한 경우입니다.

■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10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기관은 확인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 검사기관이 확인검사를 완료한 후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의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청인과 지자체 및 교육청 확인검사 담당 부서에 동시에 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검사 담당 부서는 건축물 준공 승인 부서에 이를 전달해 건축물 준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확인검사 담당 부서는 확인검사 부적합 결과증명서를 건축물 준공 승인 담당부서에 전달 해 해당 시설이 준공 승인 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고 해당 시설이 합격할 때까지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그리고 시설이 최종 확인검사에 합격했을 때에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건축물 준공 승인 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함.
- ⊙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는 VIII. 별지 서식 4를 참조하세요.

11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민간 → 국공립)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거나 지도·점검에서 합격한 시설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점검에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선의 규모가 70m² 이상이라고 알고있는데, 00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노후화된 벽지 70m² 이상을 수선했고 수선하지 않은 해당 과학실의 바닥면적이 70m² 이하입니다.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수선한 곳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직접 수선한 벽체의 수선 면적이 70m² 이상이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입니다.

- ⊙ 수선 행위에 따른 확인검사 해당 여부 판단은 수선 행위가 이루어진 곳의 면적이 70m²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13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수선 공사의 규모는 70m²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40m²씩 나누어 수선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동일 자재로 수선하였고 1차 수선 공사를 마친 시기와 2차 수선 공사를 시작한 시기와의 간격이 짧은 경우, 확인검사 도입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확인검사 대상입니다.

- Ⓞ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공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첫 공사 이후 상당 기간이 흘러 2차 공사를 실시한 경우 별개 공사로 판단해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은 해당 현장을 향후 지도·점검 대상 1순위에 포함시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14 **00교육청 관내 00유치원의 경우 '96.12.22.* 설치되었고 현재(23.1)까지 증축·수선이 없어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지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신도시 건설로 원생이 늘어나 유치원을 증축할 예정인데, 증축 공간은 물론 기존 공간까지도 확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환경보건법 시행일(09.3.22.) 이전, 확인검사 제도 시행일(14.3.24.)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기존 공간은 신축, 증축 및 수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 Ⓞ 하지만, 증축 시설은 확인검사를 받게 되므로 이후부터 교육청 관리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그동안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인 00교육청은 다가오는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 대상 1순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15 **초등학교 신축 현장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부분만 완공된 현장입니다. 부분 완공된 시설에 한해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 Ⓞ 다만, 시설별 준공시점이 크게 달라 일부 시설에 대해 감독기관이 사용 승인할 예정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부분 완공된 시설은 확인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16 확인검사는 어떤 경우에 면제받게 되나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고무(수지)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입니다.

-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 재질 바닥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 환경표지 마크가 붙어 있는지, ㉡ 붙어 있다면 이러한 환경표지 마크를 획득한 인증 사유가 '유해물질 감소'인지,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입니다.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는 위 증축 또는 수선과는 달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 재질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이는 신축한 어린이활동공간은 증축 또는 수선한 시설과는 달리 어린이 환경보건 제도권에 첫 진입하였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며, 신축 어린이활동공간 또한 최초 확인검사 합격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영과정에서 증축, 수선한다면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시 확인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제1호

03

지도·점검 관련

17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은 「환경보건법」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환경보건법」 제29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8 지도·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지도·감독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필히 소지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 이를 관계인(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 ② 그리고 검사기관 없이 담당 공무원만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중금속 기본검사를 위한 XRF(중금속간이측정기),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시료채취 확인서, 지도·점검 기록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19 현장에 방문하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행정실에 들러 지도·점검 대상인 교실 등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로,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고무재질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이후 해당 시설 지도·점검 대상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로 시공한 곳은 제외하고 그 외 공간을 최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점검 대상으로 확정된 각 교실 등을 출입하여 먼저 육안검사가 가능한 곳(벽체 도로 벗겨짐, 크랙 등)부터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번째로 육안검사가 완료되면 도로, 마감재료 등에 중금속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하는 기본검사를 실시하고 기본검사서에서 환경기준 70퍼센트(%) 이상을 확인하면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방부제,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생충 등은 간이검사를 생략하고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정밀 검사로 바로 진행합니다. 건축 자재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은 일반적으로 육안, 기본, 정밀검사 順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본·정밀검사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매뉴얼 VII. 부록 4를 참조하세요.

20 검사기관 직원이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 없이 단독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검사기관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검사기관은 지도·점검차 방문한 시설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했는지 준수하지 않았는지 환경유해인자를 시험·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 검사기관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반드시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입회하에 일련의 지도·점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2.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21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주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제23조제4항에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에게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감독기관은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실제 지키고 있는 지를 수시* 또는 일정 기간**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 행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 어린이활동공간(학교 등)에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들여와 실내공기 오염 발생 우려가 있거나, 부실 시공으로 어린이 건강 피해 우려가 있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뒤 기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갱신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환경안심 시설 유효기간인 3년을 고려할 때, 최소 3년마다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환경안심 인증 시설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3년 마다 인증 갱신여부 판단을 위해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도·점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감독기관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환경부에서 개발 중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23.12.)되면, 감독기관 담당 공무원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그간의 지도·점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3조의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22 관내 00어린이활동공간이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서에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환경보건법」 적용을 받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휘발성이라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관리가 쉽다고 들었습니다. 평상시 또는 건축물 증축·수선 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검사 또는 지도·점검과정에서 측정되는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총 2가지로 포알데하이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입니다. 이 두 물질은 휘발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환기만 잘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환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휘발성: 보통 온도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어 날아 흩어지는 성질

아래

1. 신축, 증축·수선한 경우 환기 방법

- 창이나 문 등 환기구를 밀폐시키고 실내 온도를 약 30~40°C를 만든 상태에서 5~6시간 정도 유지한 후 환기를 30분 정도 시킵니다. 급속 환기는 맞통풍을 추천합니다.

2. 평상시 환기 방법

- 하루 3번 이상 30분씩 하되, 오전 10시 이후와 일조·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환기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로 완전히 교환하기 위해 마주 보는 창문을 여는 맞통풍을 추천합니다.

자체 지도·점검 또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지도·점검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도·점검 대상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할까요?

먼저, 지자체 및 교육청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감독기관 여건에 맞게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 ㉠ 다만, 아래와 같은 공통 원칙을 고려해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면 어린이 환경보건을 물론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1.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순환 주기 고려
 - 예) 00지자체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순환 주기를 분석한 결과, 순환 주기는 평균 3년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고려해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해 연도 지도·점검 대상 중 1, 2년차 어린이활동공간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2. 차년도에 증축, 수선이 예정된 시설로 확인검사 대상인 시설은 제외
3. 환경안심 시설은 제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4. 시설 노후화가 심해 중금속 및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시설은 우선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

끝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개발중인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23.12.)되면, 감독공무원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그간의 지도·점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24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에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이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도 430m² 이상 되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 「환경보건법」과 동일한 안전기준(유지 및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430m² 이상 되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은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준수와 관련해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독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환경부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개선을 심의 의결, '21. 8.)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최근 1년) 및 권고(최근 2년) 기준을 준수한 시설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준수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5 시설 한 개소당 지도·점검 소요시간과 보통 하루에 몇 개의 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 1개소 기준으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검사기관은 하루에 보통 4개 내지 5개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초등학교·특수학교는 1개소 기준으로 3~4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기관은 하루에 보통 1개 내지 2개의 초등학교·특수학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시설면적 및 유형에 따라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6 지도·점검 과정에서 시료(중금속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는 검사기관으로 가져가 시험실에서 시료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료분석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검사기관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감독기관은 지도·점검을 수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밀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에서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가요?

시설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 조치가 필요합니다.

- ⓐ 물론 감독기관 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중금속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벽지는 시설 개선 명령을 해야 하며, 실내공기질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공간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명령을 해야 합니다.
- ⓑ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및 이행보고서 서식은 매뉴얼 VIII. 별지 서식 1, 2를 참조하세요.

관련 규정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4.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28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위임한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보건법」이 언제 개정되어 지자체 및 교육청 고유 사무가 되었나요?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명령 권한 및 지도·점검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군·구 및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환경보건법」이 '21.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됨)

- ⓐ 다만, 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04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매 관련

29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환경표지 인증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각 제품군별로 인증제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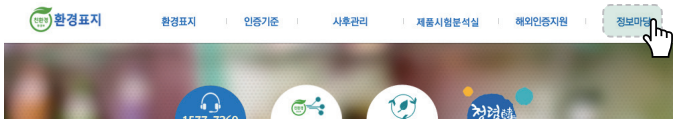
- ②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제품 확인 및 구매 등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 상담센터 (☎1577-73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1. 네이버 검색을 통해 환경표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el.keiti.re.kr>)



2. 환경표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정보마당'을 클릭합니다.



3. '정보마당' 페이지의 왼쪽 메뉴 중 '인증현황 자료실'을 클릭하면 인증제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 공지사항
- 비용납부 정보
- 자료실
- 인증현황 자료실
- 홍보자료

인증현황 자료실

◎ 정보마당 | 인증현황 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일	등록일	다운로드	조회수
131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12.31.)	관리자	2023-01-02		1905
130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11.30.)	관리자	2022-12-01		1713
129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10.31.)	관리자	2022-11-02		1886
128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9.30.)	관리자	2022-10-04		
127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8.31.)	관리자	2022-09-01		
126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7.31.)	관리자	2022-08-01		1863
125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6.30.)	관리자	2022-07-04		
124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5.31.)	김시연	2022-06-08		1605
123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현황(2022.04.30.)	관리자	2022-05-02		2139

30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해 실제 시공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매내역서와 제품 견본 또는 제품 잔여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① 환경표지 인증 제품 구매내역서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확인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이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확인검사 합격여부를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1-222호, '21.11.8.)

05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3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조건이 어느 한계까지만 안전할 때 그 한계가 되는 값으로 중금속 안전기준,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토양 안전기준, 목재 방부재 안전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는 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① 감독기관은 관할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그리고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 결과증명서가 접수될 때도 해당 시설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구분		항목별 상세 환경안전관리기준
시설물		① 녹이 슬거나 ② 금이 가거나 ③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도료, 마감재	실내외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납: 합량으로 90mg/kg 이하
	실내	①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표면재료)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 총합량 0.1% 이하 ② 신축 등 확인검사 대상인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폼알데하이드 0.002mg/m ³ ·h 이하, 톨루엔 0.08mg/m ³ ·h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5mg/m ³ ·h(페인트) 또는 40mg/m ³ ·h(벽지·바닥재) 이하 등 * 방출량 시험을 위한 시험편(Test piece)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실내공기를 포함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를 측정함.
목재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 ② 크로뮴-구리-비스 화학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를 사용한 목재 사용 금지(단,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료로 목재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
모래 등 토양		① 납: 200mg/kg 이하, ② 카드뮴: 4mg/kg 이하, ③ 6가크로뮴: 5mg/kg 이하, ④ 수은: 4mg/kg 이하, ⑤ 비소: 25mg/kg 이하, ⑥ 기생충란 미검출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① 표면재료에 들어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 ②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mg/kg 이하 ③ 프탈레이트류(DINP, DnOP 등 7종)의 총합량: 0.1% 이하
실내공기질		① 폼알데하이드의 농도: 80μg/m ³ 이하 ②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400μg/m ³ 이하

관련 규정

1. 「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2. 「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3.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제도

IV 어린이활동공간
오염도량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범위

VI 권역별
도량(O&A)

VII 부록

VIII 별지서식

32 어린이놀이기구에 칠해진 도료가 벗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도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인가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어린이놀이기구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어린이놀이기구 훼손 및 어린이놀이기구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조사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및 안전점검(일간, 주간, 월간 등)을 실시하고, 이때 기구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은지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 항목은 매뉴얼 1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 다만,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바닥재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VI. 질의 응답 36번 참조)
- ✔ 감독기관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차 방문한 현장에서 어린이놀이기구 훼손(녹 발생, 도료 벗겨짐 등)을 확인하는 경우, 훼손 부위를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지자체 및 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놀이 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부서에 전달해 향후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관련 규정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3.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기준」(행안부 고시 제2021-22호, '21.3.5.)
4.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행안부 고시 제2019-48호, '19.6.7.)

06

기본 및 정밀검사 관련

33 기본검사는 무엇이고 정밀검사는 무엇이나요?

기본검사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하는 검사를 말하며, 정밀검사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도료(페인트)나 마감재료(시트지 등)는 보통 기본검사 후 정밀검사가 진행되며, 토양이나 실내공기 질은 바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진행됩니다.

구분		기본 검사	정밀 검사
제1호 (시설물)		○ (육안 검사)	×
제2호 (도로, 마감재료)	가목	1), 2) ○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실시
		3) ×	○
	나목	×	○
제3호 (목재)		○ (육안 및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 기본검사 결과, 비소 등이 0.05% 이상 검출된 경우 실시
제4호 (토양)	가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나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5호 (합성고무 바닥재)	가목	○ (중금속간이측정기 검사)	○ 기본검사 결과, 측정값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실시
	나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다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6호 (실내공기질)	가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나목	×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
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22호, '21.11.8.)

34 환경유해인자 시험있어서 어느 시험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시험·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6호, '22.2.7.)

35 기본검사 결과(부적합)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나요?

기본검사인 육안(뱀눈)으로 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곳은 기본검사 결과만으로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환경안전관리기준 제1호부터 제6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육안(뱀눈)으로 충분히 시설의 훼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속에서 녹이 발생했거나, 도로의 벗겨짐, 시설물 크랙(㉸) 같은 경우는 위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중금속간이측정기(XRF)를 활용한 기본검사의 결과(부적합)만으로는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중금속간이측정기 기본검사 결과(기초)는 정밀검사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입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07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연계 관련

36 00지자체는 행안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 설치검사 완료前에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안부 설치검사 어느 단계에서 환경부 확인검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① 이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바닥재에 대한 환경부의 확인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서와 행안부 설치검사 신청서를 함께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안부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관리 절차는 매뉴얼 VII. 부록 2를 참조하세요.
- ②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환경부-행안부 간 중복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행안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개정 ('16.12.8.)되었으며, 개정 고시에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바닥재에 대한 확인검사를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었고 행안부는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정 전에 환경부 확인검사 결과 (바닥재에 한함)를 받고 있습니다.
- ✔ 행안부 설치검사 합격한 시설은 환경부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관련 규정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2.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안부 고시 제2021-22호, '21.3.5.)
3.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제2호
4.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19.12.)

3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행안부 설치검사에 합격하면 환경부 확인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설치검사 서류를 검토하였는데,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이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여부만을 확인하고 설치검사 합격증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경부 확인검사 면제 대상이 되나요?

이 경우 환경부 확인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신축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구가 설치된 바닥에 대해 기본 및 정밀검사를 실시(시험검사방문 및 시료 채취분석)해야 합니다. 해당 현장이 행안부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환경부 확인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1.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제2호

VII.

부록

- 0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02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관리 절차
- 03 어린이놀이기구 현황
- 04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기관 현황
- 05 항목별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방법 세부 사항
- 06 공간별 시료채취 지점

0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 (기구적 요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모래, 포설,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장소적 요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된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놀이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 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024년 6월 23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2024년 6월 23일까지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부칙 제31805호 제3조제1항, 제2항)
 -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업무 수행
- 단, 2004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2019년 7월 7일까지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받고(2015.12.24. 이전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는 제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한다.
 - * 2004. 12. 9. 이전 설치 놀이시설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중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9~10페이지 놀이기구의 예시 참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겨울철 혹은, 폭설 등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의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가 불가할시, 합격 판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동안 검사를 유예하고, 기간내에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합격판정을 취소한다.
- 물순환시설검사는 물을 채워서 진행하므로, 시설의 동파 및 바닥 결빙 등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겨울철에 물순환시설에 대한 검사만 유예되고, 나머지 시설들은 유효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FAQ

- Q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해당 날짜까지 안전인증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검사 시 안전인증을 확인하지만, 시행령 별표2의 제6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제7호 유아교육진흥원은 장소가 추가된 사항으로 2024년 6월 23일까지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전에 안전인증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설물은 인증없이 정기시설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용금지 조치 후 해당 내용을 이행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02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관리 절차

놀이시설의 설치 (설치업자)

- 안전인증 제품을 설치 또는 설치 후 안전인증 신청(인증받지 않은 제품)
- * 인증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필요

놀이시설 등록 (설치업자)

- 놀이시설 설치 소재지 관리감독기관에 요청
- 설치검사를 위해 관리감독기관에서 부여한 시설번호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설치업자)

- 바닥재 유해물질 포함 여부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놀이시설 설치검사 (설치업자)

- 행안부 지정 검사기관에 신청
- (불합격시) 이용금지 후 불합격판정 기관에 재검사 요청

▼ 합격

놀이시설 운영 (관리주체)

-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의 합격일로부터 운영 가능
- 합격증을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안전관리자 지정 (관리주체)

-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됨 (15일 이내 홍보)

배상책임보험가입 (관리주체)

-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제12조 1항에 따라 설치검사 후 합격증을 관리주체에 주는 시점
- 놀이시설 전유보험 가입이 원칙이나 특약으로도 가능
- * 보험내용은 관리주체가 보험사에 직접확인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안전점검/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

- (점검) 월1회 이상 자체점검(또는 위탁) 후 점검대장 작성
-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신청

03

어린이놀이기구 현황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종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부록)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해 제작된 부품 및 구조체를 포함한 시설과 구조물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옥내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

-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ex) 이동식 유아용 그네·미끄럼틀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ex) 꼬마기차, 봉뿔뿔
-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ex)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제품
<주의> 물이용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물놀이형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등)에 물을 공급(분사 등)하여 놀이를 용이하게 하는 놀이기구(어린이용 물놀이구는 제외)를 의미한다.
- * (비교) 어린이용 물놀이구구는 어린이가 물에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어린이 고무튜브, 어린이 구멍조끼 및 수영 보조용품 등을 말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분류	놀이기구 사진		
<p>㉠ 그네</p> <p>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 뒤 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p>	 <p>단일 회전축 그네(1형)</p>	 <p>다 회전축 그네(2형)</p>	 <p>유아용 그네</p>
<p>㉡ 미끄럼틀</p> <p>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p>독립 미끄럼틀</p>	 <p>독 미끄럼틀</p>	
<p>㉢ 정글짐</p> <p>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p>사각 정글짐</p>	 <p>복합 정글짐</p>	 <p>원형 정글짐</p>
<p>㉣ 공중 놀이기구</p> <p>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p>좌석형</p>	 <p>매달림형</p>	 <p>좌석형</p>  <p>매달림형</p>

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II 어린이행동공간 조성기준

III 어린이행동공간 조성기준

IV 어린이행동공간 조성기준

V 어린이행동공간 조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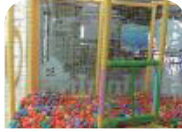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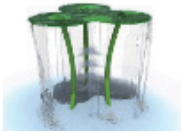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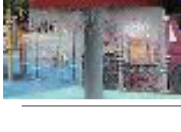





VI 권의영역(0&A)

VII 부록

VIII 별지서식

분류	놀이기구 사진		
<p>㉔ 흔들 놀이기구</p> <p>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 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p>시소1형</p>	 <p>스프링시소1형</p>	 <p>흔들2A형</p>
	 <p>흔들2B형</p>	 <p>흔들3A형</p>	 <p>흔들3B형</p>
	 <p>흔들4형</p>	 <p>흔들5형</p>	 <p>흔들6형</p>
	<p>㉕ 오르는기구</p> <p>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p>	 <p>평행봉</p>	 <p>늑철</p>
 <p>늘임봉(줄)</p>		 <p>암벽오르기</p>	 <p>복합형 오르기</p>

분류	놀이기구 사진			
㉠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회전A형	 회전B형		
	 회전C형	 회전D형	 회전E형	
㉡ 건너는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조합놀이대 ①부터 ⑥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일반형	 일반형	
		 물이용형	 물이용형	
㉣ 스페이스 넷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	 스페이스 넷	 스페이스 넷		

분류	놀이기구 사진		
<p>㉔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p>	 실내놀이기구	 트램블린 일체형 실내놀이기구	 볼풀장
<p>㉕ 기타 놀이기구 ㉑부터 ㉗까지의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p>	 모래집	 소리전달기	 자가발전 놀이
	 물놀이대	 모래놀이기구	 기차놀이대
	 점프볼	 원반놀이기구	 돌림판
	 물놀이대	 물놀이대	 물놀이대
	 물이용형	 물이용형	 물이용형
<p>㉖ 충격흡수용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p>	 고무매트	 고무블럭	 실내매트

04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기관 현황

I.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 현황 및 연락처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 3길 30	02-570-3114
2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북구 함박봉로 140번길 120	051-309-7230
3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5	053-760-1255
4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032-440-5423
5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84	062-613-7505
6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042-270-6800
7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	052-229-6199
8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 2로 12	044-301-4511
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62	031-250-2600
10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	033-248-6400
1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4	043-220-5902
1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흥예공원로 8	041-635-6800
13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	063-290-5200
14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	061-240-5100
15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하읍 고수골길 22	054-339-8114
16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055-254-2300
17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41	064-710-7546

II. 어린이활동공간 검사기관 현황 및 연락처

번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1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02-2102-2608
제2호	(재)FIT시험연구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043-711-8868
제3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115번길 74	031-428-3817
제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2284-1656
제7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02-860-7150
제9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02-2637-1234

05

항목별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방법 세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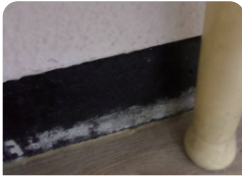
■ (제1호) 시설물 외관부 육안 검사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설물 도료가 벗겨졌거나 콘크리트 벽체에 부착된 마감재료(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가 파손된 곳이 있는지를 맨눈으로 점검하여야 함.

금속재료 시설물 부식된 곳이 있는지, 외관부에 칠해진 도료나 설치된 마감재가 벗겨져 부식될 우려가 있는지를 맨눈으로 점검하여야 함.

목재 재료 시설물 도료가 벗겨졌거나 벽체에 부착된 마감재료가 파손된 곳이 있는지를 맨눈으로 점검하여야 함.



벽체 도료 벗겨짐



철재 외관 도료 벗겨짐



목재 외관 도료 벗겨짐

■ (제2호 '가목) 도로 및 마감재료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시료채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로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로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2) 납은 질량분율로 90mg/kg 이하일 것
 - * '22.4.7.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5.12.31.까지 유예(기준 규정인 600mg/kg 이하적용)
-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 '22.4.7.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25.12.31.까지 유예(프탈레이트류 환경안전기준 미적용)

검사절차

- ① 어린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지면으로부터 160cm)를 고려해 측정 지점을 먼저 선정하여야 함.
(벽지, 도로 처리된 출입문, 장판바닥, 걸레받이 등)



어린이집 보육실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측정 지점 사진

<중금속>

- ②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색상이 다르면 중금속 농도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측정하여야 함.
 - 부위별로 측정 지점 누락없이 먼저 중금속 간이측정기(XRF)로 기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바닥 측정



벽 하단 측정



벽 측정



출입문(마감재 부착) 측정



창틀 측정

③ 중금속 간이측정에서 측정 결과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퍼센트(%) 이하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70%를 초과하여 중금속 총합이 700mg/kg 초과이거나, 납이 63mg/kg 초과(기준 시설은 420mg/kg 초과)일 경우에는 해당 측정 부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 색상 및 재질별로 표면만을 2g 이상 채취하여야 함. 물리적 작업 과정에서 도료의 채취가 어려운 경우는 아세톤과 에탄올 용액을 1:1 비율로 섞어 도료 표면에 분무한 후 채취하면 손쉽게 도료를 채취할 수 있음.
- 재질 특성상 1개의 시료 채취 지점이 시험분석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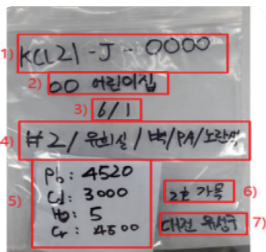
아세톤-에탄올 용액 분무



도료 시료채취 (2g 이상)

<프탈레이트류>

- ④ 합성수지 재료의 바닥재로 시공된 PVC계, 인조자극, 인조잔디 등에 대해 사용용도 및 재질을 구분하여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위를 선정하여야 함.
- 칼을 사용하여 채취부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약 5g ~ 10g 정도 채취한다. 표면 채취 시 기초부분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함.
- ⑤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채취 봉투 사진

- 1) 접수번호
- 2) 시설명
- 3) 검사일자
- 4) 시료 정보
- 5) 측정값
- 6) 환경안전관리기준 분야(2호 가목)
- 7) 지역

채취 봉투 기재 내용

■ (제2호 '나목') 확인검사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시에는 제외

■ (제3호 '가목') 목재 방부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시료채취)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검사절차

- ① 원목이거나, 친환경 페인트 등으로 도장한 목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함.
- ② 목재 표면이 크레오소트유를 사용해 검은색을 띄는지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타르 또는 기름 냄새가 나는지도 확인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대상이 아님.

방부제 사용 목재

(일반 목재)	(크레오소트유 사용 목재)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사용 목재)
		
-	흑갈색 또는 어두운 적갈색	푸르스름한 색

- ③ 방부제가 흘러나와 번진 부분에서 표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칼로 1cm 깊이로 5g 채취하여야 함.
- ④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 (제3호 '나목') 목재 방부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시료채취)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나. 크로뮴-구리-비스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 검사절차

- ① 원목이거나, 친환경 페인트 등으로 도장한 목재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함.
- ② 중금속 간이측정에서 측정 결과가 CCA(크로뮴, 구리, 비소)합이 500mg/kg 이상이거나 비소의 농도가 50mg/kg보다 높은 경우 해당 측정 부위의 시료를 칼로 5g 채취하여야 함.



목재 중금속 간이측정



목재 방부제 시료채취

- ③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 (제4호 '가' 및 '나'목) 토양 정밀검사(시료채취)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검사절차

- ① 토양에 들어 있는 중금속을 확인하기 위해 모래 놀이시설 등에서 아이들이 주로 모여있는 장소를 토양 채취 장소로 정하고 다시 중심점을 정한 후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총 5개 지점에서 각 지점마다 60g씩 총 300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함. 각 지점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5~10m 이격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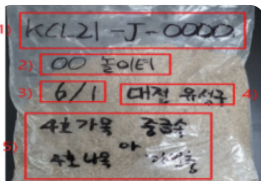


모래 놀이시설 토양 채취 장소



토양 채취

- ② 토양에 들어있는 기생충(란)을 확인하기 위해 위 채취 지점 바로 옆 지점에서 50g씩 총 250g을 채취 하여야 함.
 - 다만, 위 채취 지점과는 별개로 야생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분변이 확인되었거나, 출입이 빈번해 야생동물 분변 발견 가능성이 높은 곳은 50g 추가 채취할 수 있음.
- ③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채취 봉투 사진

- 1) 접수번호
- 2) 시설명
- 3) 검사일자
- 4) 지역
- 5) 환경안전관리기준 분야(4호 '가' 및 '나'목)

채취 봉투 기재 내용

■ (제5호 가목)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시료채취)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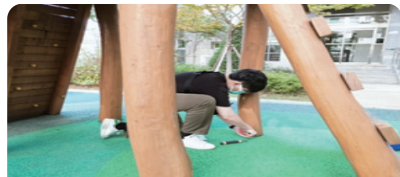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합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검사 절차

- ① 중금속 간이측정에서 측정 결과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퍼센트(%) 미만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70% 초과인 중금속 총합이 700mg/kg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측정 부위의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함.
 - 색상 및 재질별로 표면만을 2g 이상 채취하여야 하며, 기초부분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재질 특성상 1개의 시료 채취 지점이 시험분석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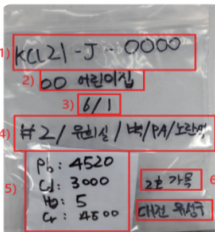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바닥재 시료채취

- ②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채취 봉투 사진

- 1) 접수번호
- 2) 시설명
- 3) 검사 일자
- 4) 시료 정보
- 5) 측정값
- 6) 환경안전관리기준 분야(5호 가목)
- 7) 지역

채취 봉투 기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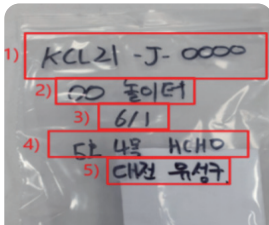
■ (제5호 '나'목)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정밀검사(시료채취)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포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mg/kg 이하일 것

검사절차

- ①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는 기본검사 없이 시료를 바로 채취하여야 함.
 - 칼을 사용하여 바닥표면을 10g 이상 채취하되, 기초부분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바닥 재가 여러 색상일 경우는 각 색상별로 시료를 균등한 양으로 혼합하여 1개 시료로 만들.
 - 재질 특성상 1개의 시료 채취 지점이 시험분석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②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채취 봉투 사진

- 1) 접수번호
- 2) 시설명
- 3) 검사일자
- 4) 시료 정보
- 5) 측정값
- 6) 환경안전관리기준 분야(5호 '나'목)
- 7) 지역

채취 봉투 기재내용

■ (제5호 '다목)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정밀검사(시료채취)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검사절차

- ①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는 기본검사 없이 시료를 바로 채취하여야 함.
 - 어린이활동공간 내에 합성고무 바닥재로 시공된 고무매트, 포설매트 등에 대해 사용용도 및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 시험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적절한 시료 채취 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칼을 사용하여 채취부위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긁어내어 약 5g ~ 10g 정도 채취한다. 표면 채취 시 기초부분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함.
 - 재질 특성상 1개의 시료 채취 지점이 시험분석 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2곳 이상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음.
- ② 채취한 시료는 유리 용기, 폴리에틸렌 용기 등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 (제6호 '가' 및 '나'목) 실내공기질 정밀검사(시료채취)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mu\text{g}/\text{m}^3$ 이하일 것
-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mu\text{g}/\text{m}^3$ 이하일 것

검사절차

- ① 시료채취 장소(삼각대 설치 장소)는 환기시설의 위치, 실제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창문 등 자연환기구 또는 기계환기설비(급배기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최소 1m 이상)에서 채취하되, 급배기구 설치 공간같은 경우는 공기유동경로 및 기류 발생원에 위치하지 않도록 함.
 - 한 공간에 다수의 자연환기구와 급배기구가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각 기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중간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 아이들이 수업 받거나 생활하는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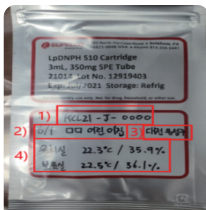


삼각대 설치



시료채취 장치 설치

- ② 시료를 채취할 장소가 선정된 후에는 해당 장소에 삼각대를 설치(높이는 약 1.2~1.5m)하고 삼각대에 폼알데하이드 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장치를 최종 설치함. 이후 30분 동안 시료를 채취 함. 첫 시료채취가 완료된 후 보육실 내 다른지점으로 삼각대를 옮겨 30분 동안 2번째 시료를 채취 함. (ex: 보육실 2실 × 시료 2개 = 시료 4개)
- ③ 채취한 시료는 투명 봉투에 밀봉하고, 각 내용을 기재한 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함.



채취 봉투 사진

- 1) 접수번호
- 2) 검사일자, 시설명
- 3) 지역
- 4) 제1측정 지점명 및 온습도
- 4) 제2측정 지점명 및 온습도

채취 봉투 기재내용

06

공간별 시료채취 지점

㉠ 어린이놀이시설

초등학교 놀이시설 / 아파트 놀이시설 / 도로 휴게시설 놀이시설



모래 바닥만 해당, 놀이기구는 해당 없음.



모래 바닥만 해당, 조합놀이대 등 기구는 해당 없음.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만 해당, 조합놀이대 등 기구는 해당 없음.

㉡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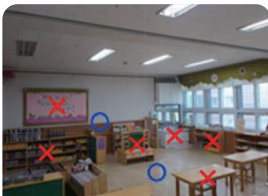
보육실



바닥재·벽·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되나, 기성 매트, 미술작품, 놀이기구 등은 해당 없음.

㉢ 유치원

교실



바닥재·벽·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되나, 책상, 책장, 게시판, 가정매트, 완구 등은 해당 없음.

I 어린이활동공간
경관·안전관리 계획서 제도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요령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VI 집의 방문
(0&A)

VII 부록

VIII 별지서식

④ 초등학교

교실 / 학교도서관 / 컴퓨터 교실



바닥재·벽·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되나, 칠판, 책상, 의자, 책장, 스크린은 해당 없음.

⑤ 특수학교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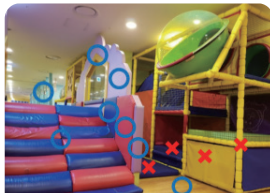
바닥재·벽·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되나, 책상, 사물함, 게시판,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은 철재 문은 해당 없음.

⑥ 키즈카페

붕붕뽀뽀 설치 / 폐쇄형 놀이기구 설치 / 블럭방



붕붕뽀뽀는 해당 없으나, 벽 마감재(충격 흡수용 발포재)는 해당함.



폐쇄형 놀이기구는 해당 없으나, 바닥재·벽(충격 흡수용 발포재, 시트지, 벽지, 도로 등)·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함.



완구(블럭)는 해당 없으나, 바닥재·벽(충격 흡수용 발포재, 시트지, 벽지, 도로 등)·창(틀)·문(틀)의 도로 및 마감재는 해당함.

VIII.

별지 서식

- 01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 02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0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04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0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서
- 06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 07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08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 0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 10 시료채취 확인서

01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4. 7.>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위반 내용:
6. 위반 장소:
7.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 일자 :
8. 개선조치 사항: 시설 개선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9. 개선조치 기한: 년 월 일까지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내에 위반 내용을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직인

첨부서류: [] 개선명령 상세내용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02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4. 7.>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개선 사항				
개선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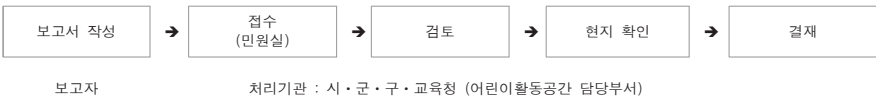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 [백상지 80g/㎡]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개선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제도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요령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방법

VI. 질의·응답
(Q&A)

VII. 부록

VIII. 별지 서식

0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2. 4. 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대리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소재지)			
검사신청내용	어린이활동 공간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실 [] 교실 [] 학교도서관 [] 기타		
	검사대상	[] 신축, 연면적	m ²	
		[] 증축, 연면적	m ²	
		[] 수선, 면적	m ²	
신축, 증축, 수선일자		검사 희망일자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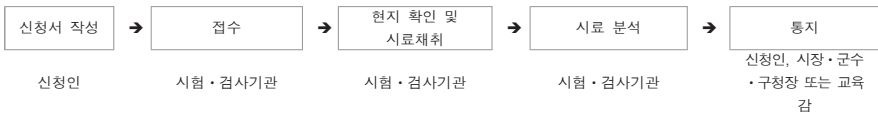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기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04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2. 4. 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어린이활동 공간의 관리 자 또는 소 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검사결과	검사 구분	[] 기본검사 [] 정밀검사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세부 검사결과	뒤쪽 참조
	조치 필요사항	
<p>「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80g/㎡]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확인제도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제도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모형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VI. 질의응답
(Q&A)

VII. 부록

VIII. 별지 서식

세부 검사결과

1. 시설물의 외관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검사 결과
	육안 검사	[] 적 합 [] 부적합	

2. 도로나 마감재료

가. 실내 또는 실외 활동공간의 도로 또는 마감재료

1)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중금속 검사 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2) 실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

검사 지점	적합 여부	프탈레이트류(7종*)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총합량 0.1%	

* 프탈레이트류(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나. 실내오염물질(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로나 마감재 대상)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시험 방법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적 합 [] 부적합	소형 체임버법 이용(mg/m ³ ·h)	0.02 이하		2.5/4.0 이하 (페인트/벽지)	

** 목질판상제품은 0.05 이하

** 접착제는 2.0 이하, 실란트는 1.5 이하, 퍼티는 20.0 이하, 바닥재는 4.0 이하, 목질판상제품은 0.4 이하

3. 목재

가. 목재 방부제(기준 : 사용금지)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검사 결과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방부목재 분야의 결과와 표기 방법에 따라 표기

4. 토양

가. 중금속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카드뮴(mg/kg)		비소(mg/kg)		수은(mg/kg)		납(mg/kg)		6가크로뮴(mg/kg)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4 이하		25 이하		4 이하		200 이하		5 이하	

나. 기생충란(기준 : 불검출)

검사 지점	적합 여부	검출 종류(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 적 합 [] 부적합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가. 중금속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중금속 검사 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 이하)	납	카드뮴	수은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기준(mg/kg)	검사 결과(mg/kg)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75 이하	

다. 프탈레이트류

검사 지점	적합 여부	프탈레이트류(7종*)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총합량 0.1%	

* 프탈레이트류(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6. 실내공기질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시험 방법	폼알데하이드($\mu\text{g}/\text{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mu\text{g}/\text{m}^3$)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공기포집법	80 이하		400 이하	

05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명령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신설 2022. 4. 7.>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명령서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확인검사 미이행 내용: [] 신축 확인검사 미이행
[] 증축 확인검사 미이행
[] 수선 확인검사 미이행
6. 확인검사 이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직인

첨부서류: []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06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개정 2022. 4. 7.>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확인검사 이행 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축 <input type="checkbox"/> 증축 <input type="checkbox"/> 수선					
확인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명령의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자</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감</p>					
첨부서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보고자	처리기관: 시·군·구·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I.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II.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

III.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제도

IV.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요령

V.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방법

VI. 권의영
명령(084)

VII. 부록

VIII. 별지 서식

07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실내·외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기본검사		정밀검사			
			육안	중금속 간이측정 (XRF)	시료채취를 통한 정밀측정			
제1호 (부식, 크랙)	실내·외	전체 시설	✓					
제2호	“가” 목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실내·외	도료 및 마감재		✓	✓		
	프탈레이트류)	실내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		
	“나”목 (TVOC, HCHO)	실내	도료 및 마감재			✓		
제3호	“가” 목 (방부제 A-1,2)	실내·외	목재 방부제	✓	✓	✓		
	“나”목 (방부제 CCA-1, 2,3)							
제4호	“가” 목 (중금속)	실외	모래 등 토양			✓		
	“나”목 (기생충)							
제 5호	“가” 목 (중금속)	실내·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	✓		
	“나”목 (HCHO)							✓
	“다”목 (프탈레 이트류)							✓
제 6호	“가” 목 (HCHO)	실내	실내공기질			✓		
	“나”목 (TVOC)							

08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알림 공문

- 문서24 또는 전자유통문서시스템 이용

기 관 명

수신자 광역 감독기관, 기초 감독기관

(경유)

제목 「20XX년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측정 분석 지원사업」 지도·점검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알림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00(20XX.0.0.)호 '20XX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지원 대상 확정 알림' 및 정밀화학센터-00(20XX.0.0.)호 '2022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일정 협의 등 알림' 관련입니다.
2.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측정 분석 지원사업」 관련하여 귀 기관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등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후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지도·점검 부적합 사항 개선 건의서, 1부.
2. 기본검사 결과, 1부.
3. 정밀검사 결과, 1부. 끝.

기 관 장

★인구권

부서장

협조자

시행

()

()

지도·점검 부적합 사항 개선 건의서

1. 상호(명칭): 000어린이집
2. 대표자 성명: AAA
3.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4. 위반 내용: 1호(첨부참조), 2호가목(첨부참조), 6호(첨부참조)
5. 위반 장소: 첨부참조
6.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 일자: 20XX. 0. 00.

20XX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부적합 장소 및 부위 등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의 부적합 사항이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첨부서류: [] 부적합 사항 상세내용 1부

첨부서류: 부적합 사항 상세내용 1부

○ 1호(육안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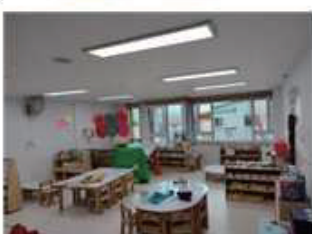
연번	점검장소	점검부위	재질	색상	결과	점검사진
1	에메랄드반	벽	도료	흰색	부적합	

○ 2호가목(도료 및 마감재료 중금속)

연번	점검장소	점검부위	재질	색상	결과	점검사진
1	에메랄드 반, 산호반	벽	도료	흰색	부적합	

○ 6호(실내공기질)

연번	점검장소	점검항목	결과		점검사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1	유희실	실내공기	부적합	적합	

구분	사진	구분	사진
전경		유희실 전경	
꽃잎반 전경		새싹반 전경	
앞새반 전경		풀잎반 전경	
뿌리반 전경		연장반 전경	
난초반 전경		열매반 전경	

(붙임 3) 정밀검사 결과

※ 제2호 가목(도로 및 마감재료 중금속)

시료명	기 준	시험결과 (mg/kg)				총 합	결과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6가크로뮴 (Cr ⁶⁺)		
22-경기포천-0314-1	납·카드뮴·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1,000mg/kg, 납 0.06% 이하일 것	0.0220	0.0327	불검출	불검출	0.0547	적합
22-경기포천-0314-2		0.96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9601	부적합 ¹⁾
검출한계 (mg/kg) - 납 0.0005, 카드뮴 0.0005, 수은 0.0002 6가크로뮴 0.0002							
시험방법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1) 유탄실, 꽃잎반, B반, A반, 산세반, 선풍반, 햇살반

※ 제3호(목재 방부제)

시료명	시험결과		결과
	크레오소트유	CCA	
18-김포시-1101-06	해당없음	불검출	적합
기준 - 사용하지 않을 것(아래의 경우 사용한 것으로 판정) · 크레오소트유 : PAHs(Benzo(a)anthracene, Benzo(a)pyrene, Fluoranthene) 3종의 합이 10 mg/kg 이상일 경우 · CCA: Cr, Cu, As 비율이 1:2:1 또는 2:1:2이고, As 50 mg/kg 이상일 경우			
시험방법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 제4호 가목(모래 등 토양 중금속)

시료명	기 준	시험결과 (mg/kg)					결과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6가크로뮴 (Cr ⁶⁺)	비소 (As)	
22-경기포천-0314-3	납 200mg/kg, 카드뮴 4 mg/kg, 6가크로뮴 5 mg/kg, 수은 4mg/kg, 비소 25 mg/kg 이하일 것	15.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8	적합
검출한계 (mg/kg) - 납 1.5, 카드뮴 0.10, 수은 0.05, 6가크로뮴 0.5, 비소 1.50							
시험방법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호)							

※ 제4호 나목(모래 등 토양 기생충(란))

0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표

I.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유자 (관리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시설면적	m ²				
어린이활동공간 유형 ¹⁾					
구 분	종 류	형 태	소유형태	시설면적	
실내 () 실외 ()	놀이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 ()	놀이시설 () 보육실 () 교실 () 학교도서관 ()	국·공립 () 사립 ()	430m ² 이상 () 430m ² 미만 ()	
놀이시설 위치 ²⁾	공원 (), 아파트 (), 체육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기타 ()				

II.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 착안 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제1호	◦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제2호가목	◦ 도료 또는 마감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0.1%이하		
제3호	◦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제4호가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비소의 기준 준수여부		
제4호나목	◦ 기생충(란) 검출여부		
제5호가목	◦ 합성고무바닥재의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0.1%이하		
제5호나목	◦ 합성고무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이하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00 ug/m³, ◦ 폼알데하이드 80 ug/m³ 이하일 것 		
-----	---	--	--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직급 성명 (인)
 소 속 직급 성명 (인)

10 시료채취 확인서

발급번호	시료채취 확인서		기관장인		
시설명 : 소재지 : 대표자 : 20 년 월 일 ()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수행한 지도·점검에서 상기 피검사자는 감독기관이 어린이활동공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시료명	채취지점	수량	채취시각		비고
			1차	2차	
			:	:	
* 필요시, 복수시료채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

인 쇄 : 2023년 1월

발 행 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T e l : 044) 201-6754

F a x : 044) 201-6765

인 쇄 처 : 대등문화사 인쇄 031) 244-1416